

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출자 : 윤기섭 의원 외 52명

나. 의안번호 : 제1364호

다. 제출일자 : 2023. 10. 6.

라. 회부일자 : 2023. 10. 23.

2. 제안사유

○ 최근 「교통안전법」의 개정으로 단지내도로 범위에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되는 통행로를 포함하면서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됨.

○ 이에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시장은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

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(안 제4조제6항 신설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교통안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3. 10. 26. ~ 10. 30.

○ 제출의견 :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○ 제출의견 : 원안 동의¹⁾

-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교통안전법 제5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경우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동의함

1) 교통운영과-16578호(2023.11.07.)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“ 「교통안전법」 (이하 ‘법’)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에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

※ 참고 : 단지내도로 정의

관련 법령	내 용
「교통안전법」 제2조(정의)	10.“단지내도로”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,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「교통안전법 시행령」 제2조의2 (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)	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1. 차도 2. 보도 3. 자전거도로

나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법에서 규정하는 단지내도로²⁾인 공동주택단지

2) 「교통안전법」 제2조(정의) 10. “단지내도로”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, 그 종류

등의 보도 등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서 시장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

- 현행 조례에서는 법에 따라 서울시 교통안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의 책무³⁾로 주거지를 비롯한 학교지역 등에 대해 교통약자 및 보행자의 안전이 보호되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배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

- 또한, 법 제57조의3제7항⁴⁾에서는 국가 등이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단지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이 단지내도

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교통안전법 시행령」 제2조의2(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)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1. 차도 2. 보도 3. 자전거도로

- 3) 「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」 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시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주거지·학교지역 및 상점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특히 교통약자,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 ③ 시장은 이륜자동차, 원동기장치 자전거,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통행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. ④ 시장은 소관 교통시설의 설치·관리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교통안전을 위한 소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 ⑤ 시장은 자동차 안전운행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3.25.>
- 4) 「교통안전법」 제57조의3(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) ⑦ 국가등은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또는 보안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
가능하다 할 것임

- 참고로 '19년도 법 개정⁵⁾으로 단지내도로에 대한 정의와 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가 새로이 규정됨에 따라 서울시도 지난 '21년 '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서울시 지원방안 계획'⁶⁾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의 지원 절차 등에 대한 기준과 지원금 분담비율(시 30% : 구 30% : 입주자 40%)을 마련한 만큼 동 개정 조례안을 통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
○ 한편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의하는 단지내도로⁷⁾의 범위는 현

5) 「교통안전법」 [시행 2020. 11. 27.] [법률 제16629호, 2019. 11. 2. 일부개정]

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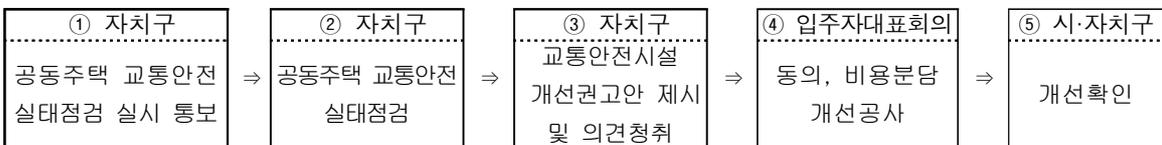
10. "단지내도로"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,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장에 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국가등은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6) '단지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·보완사업비 서울시 지원방안 검토 보고' 교통운영과-17247(2021.12.6.)

▶ 추진절차



▶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지원금 분담 비율 _ 시(30%) : 구(30%) : 입주자대표회의(40%)

7) 「교통안전법」 제2조(정의) 10. "단지내도로"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,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교통안전법 시행령」 제2조의2(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)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
1. 차도
2. 보도
3. 자전거도로

재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3호8)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를 의미하고 최근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9)에 따른 각 학교에 설치되는 통행로도 단지내도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¹⁰⁾(시행 '24.8.17.) 되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임

8)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3. “공동주택단지”란 「주택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.

9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(학교의 종류)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 1. 대학 2. 산업대학 3. 교육대학 4. 전문대학 5. 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(이하 “원격대학”이라 한다) 6. 기술대학 7. 각종학교

10) 「교통안전법」 [법률 제19673호, 2023. 8. 16., 일부개정] [시행 2024. 8. 17.]

<개정이유 및 주요내용> 이 법에 따른 단지내도로의 범위에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에 설치되는 통행로를 포함하도록 하고,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고령자, 어린이 등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 따른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

<부칙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-이하 생략-